

#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

## (운영위원회안)

의 안 번 호	2022-129
------------	----------

제안일자: 2022. 11. 4.

제 안 자: 운영위원장

### 1. 의결주문

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2023회계연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함에 따라, 예산집행의 적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함.

### 3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

# **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**

## **□ 설치목적**

- 「지방자치법」 제64조 및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9조에 따라 2023년 세입·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.

## **□ 위원구성**

- 위원회 정수는 9명으로 구성한다.

## **□ 위원선임**
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」 제6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-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.

## **□ 활동기간**

- 활동기간은 제29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로 한다.

## [관련 법령과 자치법규]

### ■ 지방자치법

- 제64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소관 의안(議案)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
  2. 특정한 안건을 심사·처리하는 특별위원회
-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### 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위원회 조례

- 제6조(위원의 선임 및 개선) ①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.
-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

- 제9조(특별위원회)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목적, 위원구성, 활동기간, 활동내용, 소요경비 등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구성, 활동기간, 소요경비에 한정하여 변경 할 수 있다.
-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종료 전 안건의 심사결과나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가 본회의 의결 전인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 때까지 특별위원회가 존속한 것으로 본다.
- ④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.
- ⑤ 특별위원회 위원 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.